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2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9월 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9월 4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6회(임사회) 제3차 위원회(1999년 9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치수과장 김영철)

- 가. 개정이유
 - 동 조례 제2조의 과태료 부과대상 각 호는 하수도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 한 부과대상과 중복되어 '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 함이 타당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제2조(부과대상)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 삭제(안 제2조)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규정 삭제(안 제2조제1호)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규정 삭제(안 제2조제2호)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규정 삭제(안 제2조제3호)
 - “법 제9조의2 규정에 위반하여 제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규정 삭제(안 제2조제4호)
 -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규정 삭제(안 제2조제5호)
 -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규정 삭제(안 제2조제6호)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규정 삭제(안 제2조 제7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유재한)

본 조례는 '88년 5월 하수도법시행령 제42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2조 부과대상의 1호~7호까지의 내용이 법 제9조, 제13조, 제20조, 제23조, 제27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조례로 정하는 것은 중복된 내용으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법에 중복된 내용이나 직제 개편으로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부과대상 규정 제2조를 삭제하는 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1
----------	----

제출년월일 : 1999. 9.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 이유

동 조례 제2조의 과태료부과대상 각 호는 하수도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부과대상과 중복되어 '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규제 개혁차원에서 폐지함이 타당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2조(부과대상)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 삭제(안 제2조)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규정 삭제(안 제2조제1호)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규정 삭제(안 제2조제2호)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규정 삭제(안 제2조제3호)
 - “법 제9조의 2 규정에 위반하여 채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규정 삭제(안 제2조제4호)
 -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규정 삭제(안 제2조제5호)
 -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규정 삭제(안 제2조제6호)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규정 삭제(안 제2조제7호)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2조(부과대상)
-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다. 합의사항 : 없음
- 라. 조 례 안 : 별첨

첨부 :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과대상)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부과대상)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법 제9조의2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삭 제”</p>